

제 28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 차 총무위원회(2025.9.3.)

#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 목 차

1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전략담당관 (의원발의)	1
2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의원발의)	8
3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4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26
5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33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 무 과	42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 무 과	44
8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광진흥과	47
9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광진흥과	54
10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61
11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67



#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라.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안 제5조)

마.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6조)

바. 의회 보고(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전략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7. 30. ~ 2025. 8. 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4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적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 명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li> </ul>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li> <li>- 공모사업: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li> </ul>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조례와의 관계</li> </ul>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계획의 수립</li> <li>- 매년 수립하고 거창군의회에 제출</li> </ul>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li> <li>-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재정협의 등</li> </ul>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의 추진</li> <li>-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대가 지급</li> </ul>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보고</li> <li>- 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li> <li>- 민간이 군과 협의하여 신청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공모사업</li> </ul>	

○ 제명에서 거창군을 명시하여 조례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은 거창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해 기획부터 사전검토, 추진,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핵심임.

○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내용에 목적 달성이 되도록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안 제7조에 의회보고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 시 해석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 우리 군은 민선 7기 이후 7년간 총 361건의 공모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총사업비 5,896억원 중 1,961억원의 군 재정을 투입하였음.
- 이는 연평균 50여 건의 공모사업을 시행 중인 셈인데 재정 자립도(2024년 기준 9.10%)가 전국 평균(23.98%)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국·도비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하지만, 이제는 공모 실적을 따지는 시대를 넘어 공모 효과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 이어야 하나,
-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 조성 후 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가 볼 보듯 뻔히 지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군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 천편일률적인 공모사업 기준에 끌어 맞추다 보니 지자체가 본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창의성과 자율성 침해 등의 역효과가 발생함.
- 덧붙여,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이미 선정된 사업의 매칭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국·도비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성급하게 신청하고 추진하지는 않는지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예산 편성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법」 상 의회의 권한을 고려해 볼 때 군수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 국·도·군비 매칭으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전 보고를 통해 의회가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음.
- 참고로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에 대해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민선7기 이후 우리군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도	건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361	589,616	271,328	59,449	196,189	56,039	
2018	30	10,465	5,646	599	3,057	1,161	
2019	45	69,189	33,947	7,463	24,168	3,611	
2020	66	90,658	44,344	8,125	30,629	7,560	
2021	70	75,826	37,232	3,121	23,589	5,274	
2022	52	145,385	76,114	15,496	49,252	4,524	
2023	46	67,904	31,153	4,922	25,679	6,150	
2024	52	130,189	42,892	19,723	39,815	27,759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2.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군민 기본 소득 지원에 앞서 기본소득의 타당성 및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창군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지원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업 지원 및 범위 (안 제4조)

다. 표창수여 근거 마련 (안 제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제1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8. 8. ~ 2025. 8.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제1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의 사업 지원 시(안 제4조) 예산이 소요 될 수 있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이 조례는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

- 이에 힘입어 각 지자체에서도 저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시행 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의 삶. 농촌을 식민지 삼아 도시가 비대해지는 사이, 농민과 도시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계속 커져 농어촌의 평균 소득은 도시에 비해 60%가 채 되지 않는 현실임.
-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운동본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임.
- 우리는 지난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청소년바우처 사업 등으로 이미 기본소득 공론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나,
-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공짜로 주는 돈’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본소득이 ‘개인의 권리를 위한 공적 지원’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 거창군이 앞장서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진군에서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5.04.04.)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 2025년 5월 8일에는 농어촌기본소득 남해운동본부가 출범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와 확산을 위해 전 군민 지지 서명운동과 조례 제정 등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 시민이 주도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전라북도는 2025년 8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며, 전북도 내 8개 군에 각 1개 면씩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될 예정임.
-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도 이미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 시행 중임.

< 경기도 연천군 시범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22년~2026년(5년)

(사업목적)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

(지원내용)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월15만원) 지급(연180만원)

(사업대상)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정부 동향 >

- ❖ 2024.12.03. 「농어촌기본소득법안」소위원회 회부/임미애의원 대표발의
- ❖ 2025.06.23. 「농어촌기본소득법」발의를 위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기본소득당)
- ❖ 주요내용 :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2028년까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을 중심으로 전체 대상의 50%에게 월 30만원 규모로 우선 실시

○ 기본소득 관련 조례 현황

구 분	자치단체	법 규 명	공포일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a href="#">시범사업</a> 에 관한 조례	2021.11.02.
	경기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2023.07.18.
	평택시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2020.12.18.
전라 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2025.04.03.
	영광군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2025.05.08.
	무안군	무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2025.04.07.
	영암군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2025.07.24.
	강진군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a href="#">운동 본부 지원</a> 에 관한 조례	2025.04.04.
전라 북도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a href="#">시범사업</a> 에 관한 조례	2025.08.08.

## 관련법령 발췌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거창군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게 주차장 및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차장 이용료 면제(안 제1조~제4조)
  - 1) 대상: 거창군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2) 시설: 수송대, 향노화힐링랜드,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 나. 시설 이용료 30퍼센트 감경(안 제3조~제5조)
  - 1) 대상: 거창군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2) 시설: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6. 25.~7. 15.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게 관내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시설의 이용료 감면으로 관광지 활성화 및 애향심 고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세입감소 발생

- 주차장 이용료 세입 현황

대 상 지	징수기간	징수액(천원)	비 고
수 승 대	2024. 1. 1. ~ 2024. 12. 31.	8,015	
산림레포츠파크	2025. 3. 25. ~ 2025. 7. 15.	194	
향노화힐링랜드	2025. 1. 1. ~ 2025. 6. 30.	13,723	
창 포 원	현재도 주차장 이용료 면제	0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현재도 주차장 이용료 면제	0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공통된 사항에 대해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그 내용은 거창군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와 시설 이용료 30퍼센트 감경하는 것임.
-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주요 개정사항
  - 제5조제1항제5호 ⇒ 제6호로 변경
  - 제5조제1항제5호 ⇒ 신설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별표3 제1호더목

현 행	개정안
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사람</u>	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주요 개정 사항
  - 제5조제2항제2호

현 행	개정안
2. 영 제9조의9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u>제10호의4까지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2. 영 제9조의9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u>제10호의6까지,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10. 생략

10의2.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체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체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13. 생략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이하생략 -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개정사항

-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u>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주차장: 면제 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 30퍼센트 감경</b></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p>
---	--

○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개정사항  
- 제20조

현행	개정안
<p>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p> <p>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u>다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p>

- 별표 2 제2호에 감면율 100분의 30란 신설

감면대상	감면율
<p>가. <u>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100분의 30</u></p>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주요개정사항  
- 제8조의2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

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

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별표2 제5호 개정

무료입장	시설 사용료 감경
5. 거창군에 <u>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	<u>100분의 30</u>

○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단순 개정 사항으로 일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상위법령에 어긋남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소관 상임위원회별 현황

소관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비고
5건	1건	4건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3]

#### 1.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	감면율
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100분의 30

###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주차장

감경대상	감경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50퍼센트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감경대상	감경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2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경기준(제6조 관련)

시설	대상	감경률(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	가. 국가보훈대상자	100분의 50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다자녀가정	100분의 30
	마. <u>거창군민</u>	
	바.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00분의 20
사. 청소년		
	아. 단체	

[비고]

- 이용료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이용료 감경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1. 입장료 면제 기준

-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사람
-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 다음의 법률(이하 이 표에서 “보훈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차.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학생 단체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2. 키즈카페, 자전거대여소, 족욕체험장 감면 기준

감면대상	감면율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마. 보훈관련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자녀나 손자녀 바. 2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 경우 자녀 모두 해당	100분의 50
<u>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lt;신설&gt;</u>	<u>100분의 30</u>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

[별표 2] 무료입장 및 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무료입장	시설 사용료 감경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u>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	<u>30퍼센트 감경</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li> <li>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li> <li>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12.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li> <li>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li> <li>14.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50퍼센트 감경</p>
--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도민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함.

## 3.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를 신설함(안 제29조)
  - 1) 분장사무: 도민체전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 2) 존속기한: 2028. 12. 31.
- 나. 한시정원을 신설함(안 제30조, 별표 5)
  - 1) 한시정원 총수: 일반직 11명
    - 가) 5급 중 1명
    - 나) 6급 이하 중 10명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66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8. 7.~ 8.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타 지역 유사사례 검토 필요

- 한시기구는 긴급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임시 기구이므로 목적 달성 후에도 해산이 어렵거나 필요 이상의 인력이 고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566	566	566	1,698

##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무원 규모 확대보다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실 강화’에 중점을 둠
- 이에, 거창군에서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한시기구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증원은 재정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7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신설하였음

-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경남도민체육대회의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는 않음.

- 신설한 [별표5]에 따르면 거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의 총수는 11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5급 1명, 6급 이하 10명으로 정하였음.
- 오는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는 4개군(거창, 함양, 산청, 합천)공동으로 개최하므로 단독 개최에 비해 진행 인력이 적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 거창군 체육회의 역할도 있을 것인데, 11명이나 한시 정원을 두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에 상반되며, 조직구성 11명 중 거창군에서 8명, 나머지 3명은 산청·함양·합천군에서 각 1명씩 파견으로 인원을 충원한다고 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경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제5항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개군 공무원 파견에 대한 결정은 아직 미정임
-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타시군의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 2026년 제65회 경남도민체전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함안군과 창녕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각 6급이하 3명을 한시 정원으로 2026년 연말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창군의 경우 2025년 9월 단독으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만, 6급 1명(겸임), 직원 4명

등으로 도민체전추진단TF팀을 202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 가평군의 경우에도 2025년과 2026년도에 단독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지만, 5급 1명만 2026년 연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면서, 도종합체전추진단에 5급 1명, 6급 이하 4명으로 구성함.

○ 이번에 개정하는 거창군의 한시기구는 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함안군 도민체전T/F담당 >

도민체전T/F 담당		055-580-3512
<b>도민체전T/F 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체전 TF 업무 총괄</li> <li>도민체전 종합계획 수립</li> <li>경기장 등 시설 개·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시사항 추진</li> <li>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li> </ul>	
<b>주무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 수립</li> <li>종목별 경기용품 구입 및 임시시설물 설치</li> <li>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행사 연출대행사 선정 및 관리</li> <li>종목별 대진 및 선수단 일정 관리</li> <li>도-함안-창녕 협조체계 유지</li> </ul>	055-580-3513
<b>주무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장 선정 및 관리</li> <li>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li> <li>자원봉사자 등 근무자 편성·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징물 및 홈페이지 관리</li> <li>종목별 요구사항 수립 및 물품 지원</li> </ul>	055-580-3514

< 창녕군 도민체전T/F담당 >

관광체육과	도민체전TF팀장	윤OO	055-530-1532	도민체전TF팀 업무 총괄
관광체육과	주무관	안OO	055-530-1533	도민체전 업무
관광체육과	주무관	성OO	055-530-1534	도민체전 관련 업무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확대함(안 제3조)
  - 1) 4급 이상 ⇒ 5급 이상
- 나. 포상금 환수 규정 정비함(안 제8조)
- 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정비함(안 제10조)
  - 1) 위원수 확대: 5명 ⇒ 6명
  - 2) 민간 전문가 1명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정비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6,200천원 확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6. 23.~7.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 제4조, 제10조에 따라 포상금과 민간위원 참석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 2025년도 620만원 소요 예상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3조	•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확대	• 4급 이상 ⇒ 5급 이상
제8조	• 포상금의 환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름
제10조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 전문가 1명 위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두차례 연임

○ 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군민의 이해를 돕고,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2025년 6월 20일 거창군 공고 제2025-900호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과정에서 발의된 해당 조항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음.

입법예고	심의안건(신설)
제3조제2항 개정없음	<p>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 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 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 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li> <li>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 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li> </ol>

	<p>3. <u>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u>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u>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u>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u>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u>  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u>고발</u>  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u>각종 제재 업무</u></p> <p>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u>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u></p>
--	--

- 2024년 12월 법제처에서 발행한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건설팀 사례집」 검토안에는 구체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입법예고 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자구를 수정하는 간단한 변경사항이 아니며,
- 덧붙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단순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 지급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조례 제3조제2항의 상당 부분이 신설된 경우는 조례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할 것임.

-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가 아닌 국·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이 타당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환수 규정이 없었음.
- 개정안 제8조에서 「공공재정 부정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자 가산에 대한 근거를 확보함.
- 개정안 제10조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향후에는 당초 입법예고 된 개정내용의 취지나 목적이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례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조문이 신설되거나 상당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4.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 「충남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 감사담당관,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 「전북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현황

-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결산기준 총 3.7조원
  -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의 징수액에 따라 5~15% 포상금 지급

<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 현황 >

구분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기타
건수	32,979,575	59,586	567,135	1,195,161	3,762,536	27,395,157
세액 (천원)	3,738,293,562	281,622,082	19,343,785	1,441,204,870	596,308,531	2,338,479,268

(출처 : 지방세통계연감)

- 「지방세기본법」은 체납된 지방세 **세입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

< 관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 ⑥ (생략)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문제점

- ①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가 아닌 국·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 경기 고양시 등은 관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재산 정보 등을 가로채는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충남 천안시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국장급(4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 누락
- 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공적심의위원회가 없어 지자체장의 재량권 남용 및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충남 천안시 등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이 타당함에도
  - 부산 기장군 등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포상의 공정성·영예성 훼손 우려
  - 경기 연천군 등은 환수 규정에 이자가산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가능성
- ④ 행정청 착오를 원인으로 인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인천 옹진군 등은 환수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가 우려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환수 시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 전가 우려

□ 개선방안

- ①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경기도 고양시 등은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기준을 5급(과장) 이상으로 개선
    - ※ 관리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로 규정
- ②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참여를 명시
- ③ 부산 기장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및 이자 가산 규정 마련하고, 경기 연천군 등은 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개선
- ④ 인천 용진군, 경기 고양시 등은 행정청의 착오가 원인이 되어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해당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 삭제

[타 기관 우수사례]

■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지방세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해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1)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 기 관: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나. 출연금액: 4,063천원

## 1) 2026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출연금	4,796	4,063	4,063	-	-	4,063	

※ 산출기초 : '24년 결산 보통세 40,627,030천원 × 1.0/10,000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법 제152조제3항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24년 결산 보통세 40,627,030천원의 1.0%인 4,063천원을 2026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며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집중호우로 관내 다수 토지가 매몰·유실되는 등 재산상 피해 발생으로 생활 기반이 훼손된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조속한 생계안정과 재산 회복 지원 및 인근 지자체 피해 주민과의 세제지원 형평성 확보

### 3. 주요내용

가. 피해개요

- 1) 피해지역: 남상면, 신원면
- 2) 피해유형: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부동산) 피해
- 3) 피해현황: 농경지 197필지(매몰 143, 유실 49, 매몰·유실 5)

나. 감면사항

- 1) 감면세목: 재산세(토지)
- 2) 감면대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토지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매몰·유실 토지
- 3) 감면율: 100%

4) 감면 추계액: 1,752천원

※ NDMS에 입력된 피해 토지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상 2025년 예상세액 산출

5) 감면기간: 피해 발생 연도분 재산세(당해연도 1회 한정)

6) 감면방법: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추가 감면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군이 2025년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농지의 유실·매몰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 그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명확하므로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7.16.~20.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구 분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지역
합계		<b>6곳</b>	<b>36곳</b>
시·군·구	소계	<b>6곳</b>	<b>16곳</b>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가평군</li> <li>• 충남 서산시·예산군</li> <li>• 전남 담양군</li> <li>• 경남 산청군·합천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북구</li> <li>• 경기 포천시</li> <li>•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li> <li>• 전남 나주시·함평군</li> <li>• 경북 청도군</li> <li>•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li> </ul>
읍·면·동	소계	-	<b>20곳</b>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li> <li>• 세종 전동면</li> <li>•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li> <li>•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li> <li>• 전남 광양시 다압면</li> <li>    구례군 간전면·토지면</li> <li>    화순군 이서면</li> <li>    영광군 군남면·염산면</li> <li>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li> <li>• 경남 밀양시 무안면</li> <li>    거창군 남상면·신원면</li> </ul>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시행으로 거창군 관광 및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방문의 해 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다.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정함(안 제5조~제12조)
- 라.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함(안 부칙)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관광진흥법」 제48조·제7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0백만원 확보, 2차 추경 89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령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7. 30. ~ 8.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76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조례안 제4조(사업 및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발생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119	618	-	737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거창방문의 해를 지정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 명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	• 목적 - 2026 거창방문의 해 사업의 운영과 지원	
제2조	• 정의 - '방문의 해'란 거창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2026년 한해를 말함.	
제3조	• 군수의 책무	
제4조	• 사업 및 지원 - 사업: 행사 운영, 홍보활동 및 관광상품 개발 등 - 지원: 참여자에게 기념·홍보 물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숙박 및 체험 비용/ 회의, 교육 등 참석 실비	
제5조 ~ 제12조	•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 구성, 임기 및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부칙	• 시 행 일: 공포한 날부터 • 유효기간: 2027년 3월 31일까지	

○ 조례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므로, 제명에 '거창군'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조에서 '방문의 해'란 거창군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나,

○ 거창방문의 해를 2026년도로 한정한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을 위하여 2년간 총 7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의 기준에 맞게 반영되었으며,
- 위원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인 입법 사례에 맞게 규정되었음.
- 또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과 효력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거창군 2024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2,981,143명으로 인구(59,244명)의 약 50배에 해당하나, 2025년도에는 열린음악회와 전국노래자랑 유치로 더 많은 방문객이 거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조례의 취지를 살펴볼 때 거창방문의 해는 거창창포원의 가치와 역할을 부각하여 국가정원으로서의 도약을 꾀하고 동서남북 관광벨트가 구축된 완성형 관광도시 거창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 2026년 한 해 동안 거창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서는 거창군,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업무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며, 기존 관광정책과는 달리 차별화되고 다변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도내 방문의 해 추진현황 >

- 2022년 : 남해군 / 2023년 : 밀양시 / 2023년~2024년 : 의령군
- 2024년 : 김해시 / 2025년 : 사천시, 산청군 / 2026년(예정) : 양산시, 거창군

○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이 적법하게 조례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2025. 4. 8.>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시행일: 2025. 10. 9.] 제48조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사무의 위탁, 자문,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14.6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6. 23.~7.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9조단서)

##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치유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조례안 제5조 ~ 제9조에 따라 재정 부담 발생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합계	314.6	314.6	314.6	314.6	314.6	1,573
도비	22.5	22.5	22.5	22.5	22.5	112.5
군비	292.1	292.1	292.1	292.1	292.1	1,460.5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치유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 조례안 제2조에 치유자원과 치유산업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 명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	• 목적 - 치유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제2조	• 용어의 정의 - 치유자원: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 등의 자원 - 치유산업: 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제3조 제4조	•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 -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	• 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콘텐츠 개발, 기반조성, 축제, 홍보 - 치유산업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양성 등	
제7조	• 사무의 위탁 - 치유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8조 제10조	• 자문,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 치유산업은 치유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치유산업 분야가 다양하고 영역이 넓다 보니 소관부처도 다양함.

○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치유관광이나 웰니스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의학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음.

○ 네덜란드 등 유럽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농업부서 중심의 케어팜(Care farm)을 통해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 교육서비스, 사회적재활 등에 사용해 오고 있음.

- 2025년 7월말 기준 거창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9,547명으로 전체 인구 59,268명 중 32.9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음.
- 초고령 사회는 의료비 증가, 경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가속, 건강수명 감소 및 건강 형평성 지역 간 격차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런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치유산업 육성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 및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치유산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치유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보임.
- 우리군은 25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68호)로부터 당초 ‘거창 향노화힐링특구’에서 ‘거창 치유산업 특구’로의 계획변경안이 최종 승인 및 고시됨에 따라

**< 거창 치유산업특구 >**

■ **특구개요**

- 위 치 :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등 501필지
- 면 적 : 2,916,973m<sup>2</sup>
- 운영기간 : 2024. ~ 2026.(3년)
- 사 업 비 : 302억원(국 140, 도 43, 군 116, 자 3)

■ **사업내용**

- 내 용 :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특화사업	세부사업	비고
산림치유	감악산 치유공간 조성 / 산림.명상치유 콘텐츠 운영	
농촌치유	치유특화마을 조성 / 치유농장 조성.운영 / 농촌치유 인력육성	
치유관광	웰니스 온천단지 시설개선 / 거창 치유명상 축제 / 거창한 치유브랜드 홍보	

■ 규제특례 : 3개 특례

-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치유산업 육성에 한발 앞서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때 라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치유산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母法 시행 후 법적 근거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례안이 작성되었으나,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 결여뿐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수범자인 군민이 그 내용을 더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금연구역의 지정·절차·변경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금연환경 조성을 정함(안 제4조)
- 다. 금연지도원 운영, 직무수행 범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7조)  
(현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3만원 ⇒ (변경) 5만원
- 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조의5·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94,58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7. 30.~8.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조의5·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금연환경 조성(안 제4조), 금연지도원 운영(안 제5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됨.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100%)	94,580	94,580	94,580	94,580	94,580
기금(50%)	47,290	47,290	47,290	47,290	47,290
도비(15%)	14,187	14,187	14,187	14,187	14,187
군비(35%)	33,103	33,103	33,103	33,103	33,103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비 고
제 명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목적	
제2조	• 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 금연구역: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 금연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견 수렴 - 금연구역 고시	
제3조	•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제2조제2항·제3항 준용	
제4조	• 금연환경 조성 - 금연교육, 행·재정적 지원,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홍보관 설치·운영 -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 위탁	
제5조	• 금연지도원 운영 - 공개모집,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 위촉	
제6조	•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 관할 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제7조	•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 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폐지 • 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지도원 운영, 과태료 부과 등 포괄적인 목적이 금연환경 조성으로 보여

지며, 제명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잘 표현함.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금연지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원수 또한 ‘10명 이내’로 명시하여 조례 운영에 있어 착오를 방지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에 금연지도원 연임 규정을 둠에 따라 부칙에서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였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2조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부합됨.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에서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행강제력을 높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 부칙 제2조에서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유사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군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2025. 4. 1.>

1. ~ 26.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8. 22.

### 2. 제안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나. 위탁참여인원 : 7명(예정)
- 다. 위탁사무
  - 1)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 중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업무 수행
  - 2)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3)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수탁자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지정 통합형 거점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환교육 지원센터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지침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4)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46~47, p.69~70

나. 소요예산 : 49,171천원(국24,585, 도7,375, 군17,209)

※ 2026년 기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 5. 검토의견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특수교육 과정에 있는 미취업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는 장애학생들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과 취업에 도달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 장애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시행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됨.
- 또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장애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수탁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므로 기회의 균등함을 실현할 수 있으며,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에 수행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b>특수교육- 복지연계형</b>	×	<b>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특수학교 등 ※ 필요시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b>
특화형일 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1) 시·도 또는 시·군·구는 민간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
- 2)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기간 동안의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선정 적정여부를 심사
  -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는 등 부적정한 운영 기관은 재선정 제외
- 3) 수행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음**